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산지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등 산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석채취 허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263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항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 반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의5)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등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산지전문기관인 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대상 정비(안 제37조제3항)

토석채취허가 시 원칙적으로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산지전용·일

시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토석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자 함

다. 재해 방지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위탁(안 제45조제7항)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산지의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지전문기관을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로 정함

라.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설치조건 신설(안 별표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설치조건을 규정함

마. 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8의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6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신고한 기간 동안의 채석중지’에 처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예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사방협회(이하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제3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및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법 제3조의5제2항”을 각각 “법 제3조의5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사항(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에 관한 사항(다른 법령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 및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6. 산지복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의2제2항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사방협회”를 각각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제20조의4 중 “사방협회는”을 “한국치산기술협회는”으로, “사방협회의”를 “한국치산기술협회의”로 한다.

제25조의2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부 또는 일부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은 자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한 자

제32조제2항제4호 중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토석채취허가”로, “굴취·채취한 석재”를 “굴취·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으로 한다.
제32조의2제2호가목 중 “공용·공공용”을 “다음의 공용·공공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
-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 4)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제34조제2항제4호 중 “굴취·채취”를 “굴취·채취 또는 반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굴취·채취”를 “굴취·채취 또는 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제2항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법 제37조제6항”을 “법 제3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법 제37조제8항”을 “법 제37조제9항”으로 한다.

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말한다.

제47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3호 중 “법 제37조제6항”을 “법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가목의 설치조건란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설치조건란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국가정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자. 지방정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3의2 제1호가목의 설치지역란 단서 중 “경관”을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경관”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가목 중 “설치”를 “설치(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설치지역란 중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8 비고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5호가목(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의 토석채취방법)

별표 8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건축용·공예용·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별표 8의2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의3 제1호가목 전단 중 “6개월간”을 “1년간”으로 하고,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8의3 제2호라목 중 “채취”를 “채취하거나 반입”으로 하며, 같은 호

에 라목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경우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6개월	허가취소 또는 신고한 기간 동안의 채석중지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5, 제45조, 제48조, 별표 3 제4호아목·자목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①·② (생략) ③ 법 제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u>사방협회(이하 “사방협회”라 한다)</u> 를 말한다.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u> ----- -----.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생략) <u><신 설></u>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u>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3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을 “산림청장령”으로 한다.

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사항(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에 관한 사항(다른 법령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 및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6. 산지복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⑤ 법 제3조의5제4항-----

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생략)

②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를 말한다.

③ (생략)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

-----.

⑥ ----- 법 제3조의5제4항-----

-----.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국치산기술협회-----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

----- 한국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 (생략)

③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 발생, 숙아베기 또는 벌채 이력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

치산기술협회-----.

② -----
----- 한국치산기
술협회-----

-----.

1. ~ 3. (현행과 같음)

③ ----- 한국치산기
술협회-----

----- 한국
치산기술협회-----
-----.

④ ----- 한국치산기
술협회-----

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 산방식, 관련 단체가 조사한 임금단가 등을 반영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⑥ (생략)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

-----.

⑤ ----- 한국치산기술협회-----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
--- 한국치산기술협회는 ---

한국치산기술협회의 -----

다.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 ⑦ (생략)

⑧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
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
야 한다.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생략)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
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
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

--.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
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
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
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
림자원조성비 전부 또는 일부
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은 자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
하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한 자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하
다)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
·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
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
는 경우

5. ~ 7. (생략)

③ ~ ⑥ (생략)

제32조의2(허가·신고)를 해야 하
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생략)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1. ~ 3. (현행과 같음)

4. 토석채취허가 -----

----- 굴취
· 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허가·신고)를 해야 하
는 토석채취) -----

-----.

1. (현행과 같음)

2. -----

[illegible]

가. -----

----- 다음의 공용 · 공공

용 -----

1)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신 설>

나. (생 략)

3. · 4. (생 략)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생 략)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5. · 6. (생 략)

③ (생 략)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예외 등) ① (생 략)

②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4)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나.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 굴취·채취 또는 반입---

5.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예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
출하려는 경우

4. (생략)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
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
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생략)

②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
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사방
협회(이하 “점검기관”이라 한
다)를 말한다.

③ ~ ⑥ (생략)

<신설>

-- 굴취·채취 또는 반입 ---

4. (현행과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적용
하지 않는 경우: 법 제28항제2
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제1
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 한국치
산기술협회-----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

⑦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6
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⑧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8
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
 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
 게 해야 한다.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
 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
 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 5. (생략)

6.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조성한 사업부
지 등을 계속 사업부지로 사

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
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
기술협회를 말한다.

⑧ ----- 법 제37조제7
항 -----

 --.

⑨ ----- 법 제37조제9
항-----

 -----.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u>용하여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7. (생략)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2. (생략) 3. <u>법 제37조제6항</u>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7. (현행과 같음)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37조제7항</u>-----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141